

결정

제출

고 발 장

고 발 인 1. 윤 복 남

2. 김 재 하

피고발인 하 동 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귀중



변호사 김철준, 김동균, 서상범, 최명준, 손난주,
김영기, 김춘희, 조지훈, 오세범, 이주희, 조세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7층(유성법조프라자)

TEL 031-213-2100 FAX 02-6455-21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0, 503호(정곡빌딩 남관)

TEL 02-3288-2100 FAX 02-6455-2100

결정	제출

고 발 장

고 발 인 성명 1. 윤 복 남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2층(스탠다드빌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 김 재 하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6층, 전국민중행동

고발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조지훈, 권용)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503호(서초동, 정곡빌딩 남관)

연락처 02-3288-2100, 팩스 02-6455-2100, 이메일 chos21c@lawdasan.co.kr

피고발인 성명 : 하 동 환

직업 : 국가정보원 전 대구지부장(1급 관리관)

주소 : 불상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의 다음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위반 및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2조 및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발인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김철준, 김동균, 서상범, 최명준, 손난주,
김영기, 김춘희, 조지훈, 오세범, 이주희, 조세현

-수원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7층(유성법조프라자)

TEL 031-213-2100 FAX 02-6455-21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0, 503호(정곡빌딩 남관)

TEL 02-3288-2100 FAX 02-6455-2100

결정	제출

고발 이유

1. 피고발인의 신분 및 경력

피고발인 하동환은 1992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 입사하여 약 30년간 대공수사국에서 근무하면서 수사과장(4급), 수사처장(3급), 수사단장(2급)을 거쳐 2022년 3월 대구지부장(1급 관리관)으로 퇴직한 자로서,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지하혁명조직(RO) 사건,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창원·제주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 주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지휘한 국가정보원 전직 고위 간부입니다.

2. 피고발인의 범행 내용① - 명예훼손 혐의

가. 범행의 개요

피고발인은 2024년 4월경 『우리가 몰랐던 간첩 잡는 이야기』라는 제목의 서적을 출간하고,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중앙일보 등 언론매체에 '남북 스파이전쟁 탐구' 시리즈를 연재하며, 각종 인터뷰와 강연을 통해 자신의 실명과 국가정보원 재직 당시 직책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일심회 사건, 왕재산 사건, 내란선동 사건, 민주노총 관련자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의 피의자·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인 명예훼손 내용

결정	제출

- 피고발인은 위 서적, 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일심회 사건의 주범인 장민호(마이클 장)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공작금을 카지노 도박에 탕진했다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것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석방된 장민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 피고발인은 왕재산 사건의 총책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사건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및 심리 상태,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공연히 적시한 것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 피고발인은 내란선동사건 관련하여,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발언 내용을 공연히 적시한 것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 피고발인은 그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민주노총 관련자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창원·제주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공연히 적시한 것으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 표현내용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결정	제출

저하시킬 만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이 위와 같이 공언히 적시한 사실들은, 일심회, 왕재산, 내란선동, 민주노총 관련자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창원·제주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의 피의자·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내용,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및 심리 상태, 수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들에 대한 평가 및 비판 등으로, 이는 명백히 위 피고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특히 민주노총 관련자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창원·제주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 것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라.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

피고발인 측에서는 “수사기관이 이미 발표했던 보도자료의 내용만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보도자료 내용을 훨씬 초과하는 구체적 정보 공개,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의 공개, 공익성 및 상당성의 결여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석방된 사람들에 대한 과거 사건의 상세한 내용,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내용, 피의자들의 개인적인 습관이나 특성, 심리 상태 등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발인 자신의 수사 경험을 과시하고 국정원 수사권 폐

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석방된 사람들에 대하여 과거 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다시 공개하는 것은, 이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형벌의 목적인 교화와 재사회화에도 반하는 것이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이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소결

그러므로 피고발인에 대한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므로 엄정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후 명예훼손 피해자들이 직접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3. 피고발인의 범행 내용② -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혐의

가. 범행의 개요

피고발인은 2024년 4월경 『우리가 몰랐던 간첩 잡는 이야기』라는 제목의 서적을 출간하고,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중앙일보 등 언론매체에 '남북 스파이전쟁 탐구' 시리즈를 연재하며, 각종 인터뷰와 강연을 통해

결정	제출

자신의 실명과 국가정보원 재직 당시 직책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인 비밀 누설 내용

피고발인은, (i) 수사 기법 및 내사 방법, 증거 수집 절차 등에 관한 정보, (ii) 개별 사건의 구체적 수사 과정 및 피의자 진술 내용, (iii) 일심회 사건, 왕재산 사건, 내란선동 사건, 민주노총 관련자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창원·제주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에서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및 수사관과의 대화 내용, 심리 상태, (iv) 북한의 공작 기법 및 암호 해독 방법, (v) 해외 내사 활동 및 중국 현지 수사 내용, (vi)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 관련 정보 등을 모두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비밀이라 함은 그 요건 중 하나로서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한편 위 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직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547 판결).

피고발인이 누설한 위 정보들은, ㉠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고, ㉡ 그 누설로 인하여 국가정보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 등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 이로 인해 국가 또는 국가정보원의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에 국가정보

결정	제출

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직무상 비밀'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도청자료 내용의 수집 경위에 관한 부분은 국가정보기관의 조직·편제, 활동 내용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정보가 적국에 누설될 경우 국가정보기관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명백하므로 위 법조에서 정하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6도1368 판결), 피고발인이 공개한 수사 기법, 내사 방법, 증거 수집 절차 등은 이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다. 국가정보원직원법의 입법 취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가 퇴직 후에도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재직 중 알게 된 정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것입니다(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32조).

만약 피고발인측의 주장과 같이 “수사기관이 이미 발표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들이 자신의 실명과 직책을 밝히며 수사기관 보도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되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것입니다.

특히 피고발인의 공개방식은 더욱 위 법률위반 징표를 명확하게 합니다. 즉 피고발인은 단순히 과거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라, (i) 자신의

결정	제출

실명(하동환)과 구체적인 직책(국가정보원 대구지부장, 수사단장, 수사과장 등)을 공개했고, (ii) 서적 출간, 언론 연재, 인터뷰, 강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공개하였으며, (iii) 미국 워싱턴 DC 국제 스파이 박물관에서의 강연 등 국제적으로도 공개하였고, (iv)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최근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등 매우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미 공개된 정보를 언급”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국가정보원 전직 고위 간부로서의 신분과 권위를 이용하여 국가정보원의 수사 기법 및 활동 내용을 체계적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발인에게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 제32조 위반 혐의가 명확하므로 엄정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결 론

이렇듯, 피고발인이 공개한 각 사건 피의자·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 진술 내용, 개인적인 습관이나 특성 등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석방된 사람들의 사회 복귀와 재사회화를 방해하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피고발인은 국가정보원 대구지부장(1급 관리관)이라는 최고위직까

결정	제출

지 역임한 고위 간부로서, 국가정보원직원법이 부과하는 비밀엄수의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정보원직원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다른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들에게도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서적 출간, 언론 연재, 인터뷰, 강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심지어 미국 워싱턴 DC 국제 스파이 박물관에서의 강연 등 국제적으로도 공개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인 범행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입니다.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 및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 및 제32조의 비밀누설죄에 명백히 해당하며, 그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고발인은 국가정보원 대구지부장(1급 관리관)이라는 최고위직까지 역임한 고위 간부로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피고발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들도 자신의 수사 경험을 과시하거나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기 위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는 사례가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책자, 기사 등의 입증방법은 추후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결 정	제 출

2025. 12. 10.

고발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조 지 훈



담당변호사 권 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귀중

위임장

사 건 :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등 고발 사건

고 발 인 : 윤복남 외1

피고발인 : 하동환

위 사건에 관하여 고발인들은 법무법인 다산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이에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담당변호사지정서 1부

2025 . 12 . .

위임인 1. 윤복남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2층(스탠다드빌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 김재하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6층, 전국민중행동

수임인 법무법인 다산

수원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7층(하동, 유성법조프라자)

대표전화 031-213-2100 팩스 02-6455-2100

※ 변호사 등록번호 : 12158(조지훈), 38277(권용)

※ 위 변호인의 주 담당 변호사 조지훈, 권용은 아래 연락처로 각종 통지를 받을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핸드폰 번호	010-2555-3985(조지훈), 010-3814-2546(권용)
이메일 주소	chos21c@lawdasan.co.kr(조지훈), kyy0227@lawdasan.co.kr(권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귀중

25031- 031593

(위임장 등 부착용)

경유증표(본안)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지정서

사 건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등 고발 사건

당 사 자

고발인 윤 복 남 외1

위 사건에 관하여 당 법인은 위 고발인들의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 50조 제 1항에 의거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담당변호사

조지훈(12158), 권용(38277)

2025. 12. .

법무법인 다 산

수원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7층(하동, 유성법조프라자)

대표전화 : (031) 213 - 2100 팩스 : (02) 6455 - 2100

서울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0, 503호(서초동, 정곡빌딩남관)

대표전화 : (02) 3288 - 2100 팩스 : (02) 6455 - 2100

대표변호사 김 칠 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귀중